

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

2024.3.12



여수시 조례 제2051호

붙임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1부

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·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인정 탄소흡수원”이란 「연안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, 잘피림 등을 말한다.
- “미인정 탄소흡수원”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, 해조류 등을 말한다.
- “연안 탄소흡수원”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.
- “배출권”이란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·관리하고,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전라남도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수립)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·조성·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

2.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 · 보전 지역의 관리방안
3.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 · 홍보
4.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 ·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
5.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

③ 기본계획을 수립 ·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) ① 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.(조항 추가)

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

할당 대상 업체로 하여금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.(문구 수정)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6조(조사 · 연구) 시장은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 · 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 ·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(보호 · 관리) ① 시장은 태풍 · 적조,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여수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 ·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9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산자원

공단 등 전문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국내·국제협력)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, 인근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,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자문단 구성 및 운영) 시장은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, 기업체,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